

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10일
신고인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
	법인명 (법인등록번호)		전화번호	
	주소			
시설 개요	명칭			
	소재지			
	소장 성명		생년월일	
시설 설비				
종사자 총 명 (소장 명, 상담원 명, 그 밖의 인원 명)				

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 피해상담소 설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이
의
의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법인의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임대차계약서(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(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5.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.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.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·지출예산서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건축물대장 등본	

처리절차

